노무법인 로율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14, 1802호 (공덕동, 르네상스타워)

Tel 010) 2890-7948, 02)713-2022 Fax 0303) 3444-2025

smilejhjh@hanmail.net

2026. 6. 8.

■ 제 목 : 연차휴가 사용촉진 안내

■ 내 용

연차휴가를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7월 1일부터 연차휴가 사용촉진기간이 시작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정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를 면하는 제도

※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각 근로자별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기가 상이함.

■ 연차휴가 사용촉진 상세 안내 (회계연도 운영기준 및 1월 1일 입사자기준)

구분		〈1차 사용촉진〉 (사용자→근로자) 미사용연차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 · 통보요구	(근로자→사용자) 사용시기 지정 · 통보	〈2차 사용촉진〉 (사용자→근로자) 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 · 통보
1년 이상 근무자 *법개정에 따라 80% 미만 출근자도 포함		7.1-7.10 (6개월 전, 10일간)	촉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10.31까지 (2개월 전)
1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9일	10.1-10.10 (3개월 전, 10일간)	10일 이내	11.30까지 (1개월 전)
	연차휴가 2일	12.1-12.5 (1개월 전, 5일간)	10일 이내	12.21까지 (10일 전)

■ 관련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351, 회시일자 : 2010-03-2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일련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6488, 회시일자 : 2013-11-01〉

사내전산망의 이메일을 통해 통보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가 메일을 미확인 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도달 여부의 확인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